

『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』 협약서

- 사업 명: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
- 과 제 명: 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
- 협약기간: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(7개월)
- 협약대상자

“사업주관기관”

(기 관 명) (재)울산테크노파크 (대 표 자) 조 영 신

“지원대상기업”

(기 관 명) //수요기업명 (대 표 자) //대표자명

“수행기관”

(기 관 명) 한국생산성본부 (대 표 자) 박 성 중

“사업주관기관”(이하 “운영기관”)과 “지원대상기업”(이하 “수혜기업”) 및 “수행기관”은 「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」(이하 “컨설팅”) 수행에 관하여 상호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협약의 목적

본 협약은 「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「제조데이터 기반 AI 활용 컨설팅」과 관련하여, “수혜기업”을 지원함에 있어, “운영기관”, “수혜기업” 및 “수행기관”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

- “수행기관”은 본 협약에 따라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, 협약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따른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“운영기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(1) “수행기관”은 본 사업 수행 결과로 도출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성과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성과물은 “운영기관”의 관리·활용 기준에 따른다.
- “수혜기업”은 “운영기관” 또는 “운영기관”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컨설팅, 현장실태조사,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“수혜기업”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연도로부터 3년간 “운영기관” 또는 “운영기관”이 지정하는 자의 컨설팅 관련 자료 열람 및 성과 활용 조사 요청(시스템 활용 로그, 매출액 확인서, 고용 창출 증빙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 3 조 비밀 보장의 의무

- “운영기관”과 “수혜기업” 및 “수행기관”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

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협약의 변경

1. “수혜기업”은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운영기관”은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.
2. 사유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“운영기관”은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
3. “수혜기업”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협약 변경 승인 공문 및 관련 서류를 “운영기관”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5 조 협약의 해약

1. “운영기관”과 “수혜기업”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,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2. “운영기관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 - (가) “수혜기업”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, 완수 능력이 결여된 경우
 - (나)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(나)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, 주요 상황 변화로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(다) 사업 종료 전, 울산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(라)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본 협약이 6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, “운영기관”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4. 기타 해약에 필요한 사항은 “운영기관”과 “수혜기업” 간 합의에 따른다.

제 6 조 해석 및 분쟁 해결

1.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“운영기관”과 “수혜기업”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, “운영기관”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.
2. 본 협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 및 합법적 대표자의 서명에 의한 수정 협약서로 보완할 수 있으며, 본 협약서 및 수정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일반 상 관례를 따른다.

제 7 조 기타

1.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

성하여 기명날인하고, 각 1부씩 보관한다.

첨부 1. 사용인감계 1부. (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)

2026년 5월 1일

(사업주관기관)

명 칭: (재)울산테크노파크
주 소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, 울산테크노파크
대 표 자: 조 영 신 (인)

(수혜기업)

명 칭: //수요기업명
주 소: //수요기업 주소
대 표 자: //대표자명 (인)

(수행기관)

명 칭: 한국생산성본부
주 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, 생산성빌딩
대 표 자: 박 성 중 (인)